

# 서울특별시교육청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이동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9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동현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인제, 김제리, 김태수, 문장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양민규, 이경선, 이영실, 이정인, 이준형,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최 선, 최웅식, 홍성룡 의원(24명)

## 1. 제안이유

-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촉진하고 속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교육정책 공론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공론화의제선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다. 공론화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정책 공론화”란 시민이 교육정책의 보편적 이익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담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숙의민주주의”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정에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과 합의 등을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숙의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절차를 보장한다.

2.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3. 숙의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공개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과정에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 공론화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공론화의제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존중하고, 제11조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정책 공론화 의제의 발굴 등)** ① 교육감은 교육현안 중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공론화 의제로 발굴하여 교육정책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감사기관 등에서 감사 중인 사항
-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론화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정책 공론화의 참여)** 교육정책 공론화에 참여하려는 시민을 선발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참여단을 선정하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론화의 제선정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공론화 사업의 기반이 되는 의제 선정의 타당성, 공정성, 절차적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론화의 제선정위원회를 둔다.

1. 교육정책 공론화 의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공론화 청구에 대한 공론화 추진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정책 공론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3. 교육정책 공론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의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1조(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공론화의제 관련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실무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둔다.

1. 공론화 방법 및 단계별 세부절차 설계 기획 및 결정
2. 공론화를 위한 세부의제 확정에 관한 사항
3.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공론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6.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정책권고안의 작성,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제 12조(여론조사의 실시)**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3조(교육의 실시)** 교육감은 시민을 대상으로 숙의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 공론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4조(위탁)**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여론조사와 제13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31700000008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동현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원동아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3.17.	
회신일 : 2021.03.25.	내용문의 : 02-2180-7953

###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제7조(공론화선정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12조(여론조사의 실시), 제13조(교육의 실시)는 제14조(위탁)에 근거하여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서울교육공론화사업’예산에 공론화용역위탁비(2021년 예산 2억 2천만원)가 기 편성되어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첨부)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7조(공론화선정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에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5,300천원(연평균 5,0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300천원으로 연평균 5,0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7조(공론화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제11조(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의 위원회 구성은 각각 1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1명, 서울시의원 1명을 제외한 13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함

- 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기준)

※ 상반기 공론화선정위원회 1회 개최, 하반기 공론화추진위원회 1회 개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5,300천원(연평균 5,060천원)

- 총비용 = 공론화선정·추진 위원회 설치·운영비

= 25,3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공론화선정·추진 위원회 설치·운영비 (안제7조, 안제11조)	5,060	5,060	5,060	5,060	5,060	25,300
	소계 (b)	5,060	5,060	5,060	5,060	5,060	25,300
총비용 (b-a)		5,060	5,060	5,060	5,060	5,060	25,300

○ 공론화선정·추진 위원회 설치·운영비 ≙ 25,3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연간 위원회 여비  
 ≙ 3,900천원 + 900천원 + 260천원  
 ≙ 5,060천원

· 연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3명 × 150,000원 × 2회  
 = 3,9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1명, 시의원1명을 제외한 13명 지급 전체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5명 × 30,000원 × 2회  
 = 90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연간 위원회 여비 = 구성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3명 × 10,000원 × 2회  
 = 260천원

※ 1인당 여비(국내여비, 4시간 미만) 단가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1만원으로 가정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사업내용
제12조(여론조사의 실시), 제13조(교육의 실시), 제14조(위탁)	학부모관련사업 (서울교육공론화사업)	409,040	<p>사업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정책 참여를 위한 서울교육공론화사업 운영으로 ‘민주적숙의과정’을 통한 합리적 정책 도출과 이해관계 및 갈등의 조정</li> </ul> <p>(서울교육공론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서울교육정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시민, 학생, 교사, 학부모 등</li> <li>- 내용 : ·서울교육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 추진 ·다양한 교육주체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서울교육정책 과정에 상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 공론화참여단 운영</li> <li>- 소요예산 : 409,040천원</li> </ul>

자료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